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 1.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 관련 질의

##### Ⅰ 질 의 Ⅰ

- 학교재건축공사(이하 “전차공사”)를 착공하여 학교운동장에 가설 교실을 설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교사증축공사(이하 “금차공사”)를 2008.2월에 현재 시공중인 전차공사 시공업체 와 수의계약하여 2008.3월부터 2008.11월까지 공사 예정
- 현재 전차공사에 대해서 감리업체가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차공사에 대해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토록 하기 위하여 발주단계에 있으며 금차공사는 전차공사의 구조물 측면과 상층에 일부를 붙여 또는 올려 시공 하는 공사로 동일현장에서 동일구조물을 구분하여 같은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가운데 감리용역을 2개 업체로 하여 금 감리하게 할 경우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 감리원별로 작업지시가 상이하고 전차 및 금차공사의 접합부분에 대한 작업방법 차이에서 오는 작업의 혼선으로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하자발생시 감리 책임소재 구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 경쟁입찰로 계약할 경우 용역비 설계금액이 2억6천만원정도 추정되나 수의계약시에는 전차 및 금차공사 감리용역 중복기간에 대한 감리 배치인원 조정 등으로 7천6백만원의 용역비로 계약할 수 있어 약1억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바,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가.나.다.차.하.의 규정에 의거 금차 공사 감리용역을 현재 용역 수행중인 감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하목은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감리용역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가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 2. 입찰자격적용에 관한 질의

### 질의

- 입찰참가자격에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매시방서대로 구매품목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특기사항으로 1. 도서와 MARC 구축 동시납품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발주처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질의 1) 위 입찰공고문을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되는 자격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찰참가자격요건, 자격사항평가 및 제출기한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발주처에서 명확하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격조건이라 주장하고 낙찰자를 선정한다면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발주처에서 계속 부적절한 해석을 통해 본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지연하거나 타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면 본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

질의 4) 발주처에서 입찰이후에 몇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하며 만약 수요기관에서 이를 어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 회신

- **질의 1, 2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와 입찰참가자가 공고문상 참가자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입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3, 4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공동도급 관련 질의

### 질의

-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통합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에 대하여 대표사가 다른 전기공사업체와 공동으로 협정하고, 소방공사업체와 분담으로 참여한 경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개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4. 계약된 특허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특허제품 규격이 아닌 일반 제품을 납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4호 사목에 의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한 경우라면 당초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되는 특허 제품이 납품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건설기술용역의 정의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1호)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중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용역(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사후영향조사용역)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작성업무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2항내지 4항에 명기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기술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정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환경영향조사용역이나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확인하시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6. 계약절차 중단에 따른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공고에 의해 개찰까지 진행한 입찰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경우 계약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8조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 적격심사시 1순위업체의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입찰을 진행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낙찰자 결정과는 별개의 민사관련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7. 제한을 금지해야할 사항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급식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시 입찰공고 등에 필요한 현품설명서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4.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에 “(7)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급식학교에서 식재료 현품설명서 작성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대신에 특정의 제품에만 있는 품질 또는 성분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위의 (7)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특정회사, 특정제품명, 특정의 제품에만 있는 품질 또는 성분을 명기하여 공고해서 는 아니될 것이며, 성능·품질이 동등이상인 물품을 납품하도록 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8. 수의계약 관련 질의

### 질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서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 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2가지 다른 해석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 제1 의견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특별히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가목~아목까지 어느 한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제2 의견 :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가목~아목까지의 요건 이외에 먼저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위 의견 중 제2의견이 맞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에 대한 의미

###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9.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평가 관련 질의

### Ⅰ 질 의 Ⅰ

- ○○시 입찰건과 관련하여 A사와 B사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일부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A사의 질의서에 100%권리행사라는 약정서가 있다 하니 특허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특허관할기관에 등록하였다면 신인도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특허에 관한 직접인증또는 권리취득의 판단에 관하여는 특허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임
- 이를 시에서는 특허청에 문의하니 1/N이라도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인정된다고 특허청에서 답변함
- 하지만 B사는 특허청의 권리소유와 행안부의 계약법상 신인도 가점부분이 틀린데 특허청의 권리소유만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로 A사의 약정내용이 특허청에 등재되어 있을 때 신인도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A사의 약정서는 입찰공고일(1월 4일) 이후인 1월 14일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특허권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특허권의 일부이전(일부양도)으로 인한 당초 출원자가 아닌 특허권 매입으로 인한 2이상의 다수가 공동소유자가 된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9호)에 의하여 신인도 평가시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특허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며,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통상 실시권자에게는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나, 특허 권리의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이전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라면 신인도 점수를 권리이전 비율만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0.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

### ■ 질 의 ■

- 설계시공일괄입찰 Fast-track 방식(설계·시공병행방식, 우선시공)으로 추진되는 건축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 내용 중 공사비에서 제외되는 항목(폐기물처리비, 설계보상비, 책임감리비)을 명시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및 도면작성, 행정 절차 수행 등은 본 시설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사내역서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경비는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 및 법적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 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사업시행 주체인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할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 또는 법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발주기관에서 납부의무가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부 질의

### ■ 질 의 ■

- 야간경과조명 설치를 위해 2007년도에 기본설계 완료후, 2008년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환경디자인 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 ‘전기공사법에 등록된 업체(공동 응모시 대표자 1인선정)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우리시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설계용역 및 시공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 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규정에 의하면 물품, 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설계용역과 시공까지 포함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공사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호에 의거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는 현재 정하여진 공사가 없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II.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질의모음

###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2차공사 계약관련 질의

#### ■ 질 의 ■

- 우리 청에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한 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사정으로 1차분 공사를 완료한 후 더 이상 2차분 이후의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2차공사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부관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 없이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고 2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령·예산문제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 및 투입된 인력·자재·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기간으로 계약체결 한 것이므로 2차 이후 공사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계속공사는 당초 총공사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에 의하여 발주된 사항이므로 단순히 예산상 문제로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허가조건 등이 변경되어 당해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보조금 등의 삭감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 소액수의계약 후 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 후 용역을 수행 중 당해 용역에 대하여 4대보험(연금, 의료, 고용, 산재), 은행, 개인, 타법인 등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들이 남발 하는바,
- 계약업체의 신뢰도 상실과 계약 이행이 의심스러운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e항 끝부분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신용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되며,
- 최근 1년 이내 기결격 처분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물의란 사고·민원야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압류·부도·신용불량 등은 계약해제·해지사유가 아닙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3. 용역계약에 있어 해지 또는 해제 관련 질의

### ■ 질 의 ■

- 우리시에서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위 대상지에 대한 유통단지계획사업이 개발제한구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통단지 사업이 타 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대상지가 변경될 경우에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능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법령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업변경지시를 하여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4. 유지보수 계약 해지 관련 질의

### 질의

-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1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타 업체와 개편계약이 되어서 현재 유지보수 업체의 유지보수가 의미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업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 업체가 향후 계약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계약목적물의 변경으로 계약이행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

### 질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해당되어 계약체결된 업체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생산 확인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계약해지 등)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바,
- 이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 등 자격요건이나 계약이행요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
- 계약체결전에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거나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민사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 6.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전 영업정지시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

### 질의

- 적격심사 공사건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하기 전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낙찰자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 후 인터넷을 통하여 모기관 공고를 통하여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을 경우에 낙찰자 취소 후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낙찰자 결정이 유효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견적·입찰·계약·시공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발주기관이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7. 시공실적증명서 위조에 따른 행정처리에 대하여 질의

### ■ 질 의 ■

-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낙찰자 통보 후 계약체결 이전 시공실적증명이 위조된 것을 확인 중(최종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포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질의 1) 지방계약법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종낙찰자로 통보하였으므로 지방계약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귀속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시공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청 재무관인 위조)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따른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계약체결 이전이므로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낙찰자결정 취소통지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한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면 될 것이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속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낙찰자결정 취소가 되면 귀속조치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고발여부는 형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부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니 고문번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입찰무효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지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공사의 계약 해제·해지 여부 질의

### ■ 질 의 ■

□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가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지체(50일)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공사포기를 하지 않고 채권가압류건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제51조의 규정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교육청에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안부예규)」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때까지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하도급의 노임은 노임압류금지 규정에 의거 노무에 대한 사실확인(하도급계약서, 내역서)을 하여 직불조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 및 보증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재차 계약이행 촉구를 하여도 불응하거나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타절을 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하도급 노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압류금지대상이나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노무사실을 확인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은 회계규정상 부합하지 아니하며,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압류등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지급순위를 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므로 이 경우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하고 압류·노임등 증빙서류와 함께 공탁하여 법원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9.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사 신축 예정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위 제52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또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확정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대가 및 투입인력·자재·장비 등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낙찰자 결정이후 문화재보호구역 확정으로 당해사업이 취소된 경우 낙찰자결정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입찰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0. 계약해지 절차 및 그에 따른 조치 질의

### ■ 질 의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사업수행 중 주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연락두절 등) 등으로 사업을 일시정지 시킨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수행을 촉구하였으나, 주사업자의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연대책임자인 부사업자도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음) 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이행보증청구, 부정당업자 등록 등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기성부분 인정범위 및 인수요청 시기

질의 2) 부정당업자 등록시기

## 회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과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을 인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성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수행상황 및 과업지시서등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기성인수는 기성검사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청문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동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즉시 청문 등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기간을 결정한 후 G2B에 등록하고 계약상대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면 될 것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은 당해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 11. 물품계약해제 여부 질의

### 질의

- 우리구청과 물품구매 계약 진행 중인 법인사업자가 계약기간 내내 연락도 안 되다가 납기일이 되어서야 방문해서 제품개발 하고 있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2차례 걸쳐 계약이행촉구 최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무런 계약이행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지방계약법 제91조에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이상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주장만하다가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져와서 우리는 계약일 이전에 폐업했으니깐, 계약자격요건이 안 됐다면 이제 와서 계약취소(무효화)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 복명서를 확인해보니깐 담당자가 현장조사결과 퇴거하여 소급해서 직권폐업시킨 상황이 더군요.

질의 1) 포기서 없이 담당자 판단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판단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되기 이전에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계약해제를 하고 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재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당업체제재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입찰자격정지이므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견제출서로 처분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3)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날짜가 계약체결일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와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상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계약해제는 계약체결시까지 소급하여 당초 계약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타당할 것이며,
- **질의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청문절차 등에 의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3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이 경과된 후 계약상대자가 소급하여 폐업하였다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12. 부도난 업체와 계약 해지 관련 질의

### 질의

- 계약 체결 후 전기공사 시행하던 업체가 부도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사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공사협회에 알아보니 해당업체의 전기공사업이 자진폐업 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청 직권으로 계약 해지를 해도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해지사항을 통보한 후 불응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지속여부에 관한 질의

###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평가를 통하여 1위업체를 선정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토록 협상(서류에 사인 등 동의)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당시에는 관련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었으나, 계약업체와 기술보유회사와의 관계에 의하여 기술보유회사가 계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확약 철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착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상황, 계약목적달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14. 공사 착공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질의

### ■ 질 의 ■

- 시설공사 계약체결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고 50일이 경과하도록 실제 공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바,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의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문서로 통지하여 촉구한 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